

## 1. 개정이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4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참여 방식에 보유 자산을 무상 대여하는 방식 등을 추가하고, 민간참여 신청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의2)
- 나. 민간참여 실적을 장부에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요청할 경우 장부 열람 또는 실적인정 서류 제공을 하도록 함(안 제7조의3)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① 법 제16조의2제1항 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필요한 토지 또는 장비 등 보유 자산을 해당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식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나 기술을 해당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전수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식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하려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참여 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④ 제2항에 따라 참여 신청을 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그 사실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방식의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참여 실적 인정 및 관리) ① 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민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참여 실적이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방식의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1. 참여자의 주소 및 성명(참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참여의 방식, 내용 및 규모·수량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센터의 장은 참여자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한 실적

의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실적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의4(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 영 제10조의3제2항에  
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말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민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참여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1. 공통 제출 서류

가. 기탁·무상대여·무상제공 등의 명세(토지의 경우에는 도면을 포함한다)

나. 참여 계획서

2. 참여 방식에 따른 제출 서류

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1) 기탁하려는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탁하려는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에 대한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

다.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1) 무상으로 대여하려는 토지 또는 장비 등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무상으로 대여하려는 토지 또는 장비 등의 이용에 대한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

라.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전수하려는 인력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  
는 서류

마.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방식의 내용을 고려하여 원활한 생태계서비스지  
불제계약 참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참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br>(법인·단체·<br>개인 등) | 명칭              |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단체만 기재)    |                |
|                         | 소재지<br>(주된 사무소) |                |                |                       |                |
|                         | 대표자 현황          | 성명             | 생년월일           |                       |                |
|                         |                 |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 방식                      | [ ] 직접 계약       | [ ] 지원센터<br>기탁 | [ ] 보유자산<br>대여 | [ ] 인력 제공<br>또는 기술 전수 | [ ] 그 밖의<br>사항 |
| 세부 명세                   | 사업비             |                |                |                       |                |
|                         | 보유자산            | 종류             |                |                       |                |
|                         |                 | 규모·수량          |                |                       |                |
|                         | 인력 제공           |                |                |                       |                |
|                         | 기술 전수           |                |                |                       |                |
|                         | 그 밖의 사항         |                |                |                       |                |
| 참여 목적                   |                 |                |                |                       |                |
| 사용 용도                   |                 |                |                |                       |                |
| 세부 내용                   |                 |                |                |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의 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p>1. 공통 제출 서류</p> <p>가. 기탁·무상대여·무상제공 등의 명세(토지의 경우에는 도면을 포함한다)</p> <p>나. 참여 계획서</p> <p>2. 참여 방식에 따른 제출 서류</p> <p>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p> <p>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나.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p> <p>1) 기탁하려는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2) 기탁하려는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에 대한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p> <p>다.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p> <p>1) 무상으로 대여하려는 토지 또는 장비 등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2) 무상으로 대여하려는 토지 또는 장비 등의 이용에 대한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p> <p>라.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p> <p>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전수하려는 인력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p> <p>마.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p> <p>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방식의 내용을 고려하여 원활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참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
| 업무처리자<br>확인사항 | <p>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p> <p>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p>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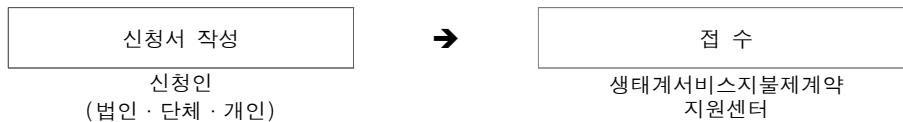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자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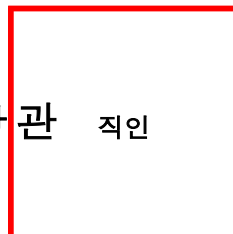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서

1. 기 관 명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4. 지 정 일 :
5. 사 업 범 위 :

위 기관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u>&lt;신 설&gt;</u> |   | <p><u>제7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필요한 토지 또는 장비 등 보유 자산을 해당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식</u></li> <li><u>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나 기술을 해당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전수하는 방식</u></li> <li><u>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식</u></li> </ol> <p><u>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하려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생태계서비스</u></p> |   |   |

지불제계약 참여 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④ 제2항에 따라 참여 신청을 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그 사실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방식의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 설>

제7조의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참여 실적 인정 및 관리)

① 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민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참여 실적이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방식의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1. 참여자의 주소 및 성명(참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참여의 방식, 내용 및 규모·수량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센터의 장은 참여자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한 실적의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실적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                           |                                                                                                                              |
|---------------------------|------------------------------------------------------------------------------------------------------------------------------|
| <p><u>&lt;신 설&gt;</u></p> | <p><u>제7조의4(생태계서비스지불제<br/>계 약 지원센터 지정) 영 제10조의<br/>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br/>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br/>제4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말한<br/>다.</u></p> |
|---------------------------|------------------------------------------------------------------------------------------------------------------------------|